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557400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미흡

진 정 인 ○○○○

피진정인 ○○○○○○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위원회장에게,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화면낭독기를 통해서만 웹사이트 사용이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받고 있다.

진정인은 2021. ○. ○○○○○○○지원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서 공모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시스템에 화면낭독기가 지원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원시스템은 2013. ○○. 기능고도화가 수행된 이후 현재 까지 약 9년간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노후시스템이다. 피진정기관은 전국의 보조사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원시스템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여 노후시스템 개선을 위해 2019. ○○. ○.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웹접근성을 포함한 시스템 전면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1,208백만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2022년에는 260백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에 요구했

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지원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는 162개 메뉴 및 248페이지의 기능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인데 구축 당시에 적용된 X플랫폼(Active-X)을 모두 제거해야만 웹접근성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약 5억 원의 정보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위 진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지원시스템의 추가 요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불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웹접근성 준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요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2021. 4. 1. ○○○○○○○○○○○○○에 입사하여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모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진정인은 2021. ○.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지원’ 공모사업 지원 업무를 ○○○○○○지원시스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처리하려 했으나, 웹사이트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웹 보조기구인 화면낭독기를 사용할 수 없어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략계획’(2019. ○○. ○.)에는 “노년층, 장애인, 저시력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웹접근성 지침 2.1」 기반의 이용환경을 마련하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 제공하는 화면낭독, 글자화면 확대제공, 색상 반전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은 2021년 ‘○○○○○○○지원시스템 재구축(1,208백만원)’과 2022년 ‘울인원 스마트 예술도움사이트 고도화(260백만원)’ 항목을 예산요구항목에 포함시켜 웹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마. 피진정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2005. 8. 26.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22개 광역·시도 협약기관(문화재단 등)과 함께 사용한다.

바. ○○○○○○○○○○○은 2015. ○. 설립되고 2017.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2015. 3. 3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개정 고시한 방송통신표준 「웹접근성 지침 2.1」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웹 콘텐츠 저자 또는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8조 내지 제33조에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소속의 정보통신예산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에 따른 지급·관리를 위해 전국 22개의 협약기관(문화재단 등)이 ○○○○○○지원시스템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있지만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중증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지원시스템에 비장애인 직원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다항, 라항과 같이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정한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미반영만을 이유로 진정한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 사람들에게 ○○○○○○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기관은 피진정기관에서 집행할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피진정기관의 예산요구서를 포함하여 전체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피진정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피진정기관의 예산이 포함된 예산서를 심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최종 편성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장애인 및 노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3.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서 미 화

위원 한 석 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4. 「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

민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